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 1. 개정사유

-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평가 기준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인증 신청기준의 유연화 등 필요사항 반영
- 인증기관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기준 마련과 문구조정 등 규정 현행화

## 2. 주요골자

- 인증 신청 기준을 개별 건축물 단위(동, 세대)로 확대 (안 제4조)
- 창 및 문의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복수 시험기관 각 1부 → 1부) 완화(안 제7조)
- 기상데이터 적용 지역(13개 지역 → 66개 지역) 확대 (안 [별표6])
-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신청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제7조의 3)
  - 신기술 평가적용 신청 제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대상 신기술의 범위 구체화(안 제7조의3)
- 인증기관 업무현황 점검에 따른 조치 기준 등 구체화(안 제10조 및 [별표5])
- 기타 규정 현행화 및 문구조정(안 제1~2조, 제4조 등)

## 3.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 4. 시행일 : 2020. 8. 4.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u>」(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 제10조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u>」(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시 제10조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현행 규칙 및 고시 명칭에 맞게 수정</p>
<p><b>제2조(적용범위)</b>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u>(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p>	<p><b>제2조(적용범위)</b> 이 규정은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u>(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u>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시행세칙으로</u>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p>	<p>시행세칙으로 규정의 역할을 명확화</p>
<p><b>제4조(인증 대상)</b> ① 인증 대상 건축물은 규칙 제2조에 해당하며, 인증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 대지안의 기존건물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p> <p>2. (이하 생략)</p> <p>3. 여러 동의 건축물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p>	<p><b>제4조(신청 기준)</b> ① 규칙 제2조에 따른 인증 대상 건축물의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전기, 열 등의 에너지 공급계획 등에 따라 신청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단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 또는 세대단위)로 인증을 신청할</p>	<p>조명수정</p> <p>조항 및 조문 정리</p> <p>인증 신청기준 세분화 근거 마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한다. 단,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전기, 열 등의 에너지 공급계획 등에 따라 신청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p> <p>②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상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 신청 단위 또는 인증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수 있다.</p> <p>②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 신청 기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불필요한 근거조항 삭제</p>
<p><b>제5조(신청 및 인증절차) ① (이하 생략)</b></p> <p>1. (이하 생략)</p> <p>2.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이하 “평가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5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p>	<p><b>제5조(신청 및 인증절차) ① (현행과 같음)</b></p> <p>1. (현행과 같음)</p> <p>2.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이하 “평가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 등급 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1.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자</p> <p>2.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근거조문 현행화</p> <p>인증서 교부 절차 반영</p> <p>인증서 미부여조항 (인증기관 권한없음)삭제 및 제3항과 통합</p> <p>제2항 통합에 따른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1.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주</p> <p>2.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p> <p>3.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p> <p>④ (이하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인증수수료)</b> 인증기관은 고시 제6조제3항의 인증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사유를 확인하고 공단과 건축주 등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환불 및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p>	<p><b>제6조(인증수수료)</b> 인증기관은 고시 제6조제3항의 인증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사유를 확인하고 <u>건축주 등에게</u>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환불 및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p>	<p>당사자간 행위로 공단 제외</p>
<p><b>제7조(인증평가 세부기준)</b>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u>기상데이터와 용도프로필</u>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등급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별표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2]의 <u>용도별 보정계수</u>를 곱하여 산출한다.</p> <p>② 벽·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 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u>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u>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저항은 최소값을 열관류율은 최대값을 적용한다.</p>	<p><b>제7조(인증평가 세부기준)</b>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u>용도프로필과 기상데이터</u>는 각각 [별표2], [별표6]과 같으며, 등급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별표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2]의 <u>용도별 보정계수</u>, 제7조의2에 따른 신기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p> <p>② 벽·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 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u>KOLAS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기상데이터 별지신설 반영, 신기술 인증평가 적용 조항 반영</p> <p>시험성적서 인정기준 완화로 민간비용 부담 완화</p> <p>용어정리</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열관류율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1부</p> <p>2. 1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창호성능확인서 각 1부</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호에 대해서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인정하여 해당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2항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일부조문 삭제</p>
<p>〈신 설〉</p>	<p><b>제7조의2(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b> ①제7조의 인증평가 세부기준에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의 적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설명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단은 매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의해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반기별로 1회(연간 2회), [별표4]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p> <p>③공단은 신청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p> <p>④공단은 제2항 따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p> <p>⑤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증평가 프로그램 개선, 인증평가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기술의 인증평가 적용을 위한 신청 및 검토절차 신설</p>
<p>〈신 설〉</p>	<p><b>제7조의3(신청대상 신기술의 범위)</b>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기술”이란 다양한 최신 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여 생산·판매되는</p>	<p>신청대상 신기술의 범위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완전한 제품(설비 등)으로서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 요청이 가능한 신기술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신기술 적용 제품</li> <li>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신기술 적용 제품</li> <li>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신기술 적용 제품</li> <li>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li> <li>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li> </ol>	
<p><b>제9조(인증기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b>  ① ~ ④ (이하 생략)  ⑤ 공단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 발견된 <u>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경고장을 발부하며,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 시 표본을 5% 할증하여 실시한다.</u></p>	<p><b>제9조(인증기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b>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 발견된 <u>경우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 시 표본을 5% 할증하여 실시한다.</u></p>	<p>처분사항은 10조로 이기</p>
<p><b>제10조(인증기관 감독 등)</b>  ① ~ ② (이하 생략)  ③ 공단은 인증기관이 <u>규칙 및 고시</u>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항 등과 같이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u>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u></p>	<p><b>제10조(인증기관 감독 등)</b>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인증기관이 <u>관계법령 및 고시, 규정</u>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 인증기관 의견수렴(소명)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조치요구(처분)를 취하여야 한다.</p>	<p>부적절한 업무처리 경중에 따른 처분 기준 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발부된 <u>경고장</u>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u>5년</u>으로 한다.</p> <p>⑤ 공단은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u>경고</u>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u>통보된 처분</u>의 유효기간은 <u>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u>로 한다.</p> <p>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u>조치요구(처분)</u> 중 <u>경고</u>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하여야 한다.</p>	
<p><b>제14조(인증업무인력 관리) ①</b> (이하 생략)</p> <p>② 「<u>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u>」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평가사를 소속 또는 등록하려는 인증기관은 해당 평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른 평가사 소속 또는 등록 보고 시 제1항제4호의 실무교육 수수료증을 대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이하 생략)</p> <p>③ (이하 생략)</p>	<p><b>제14조(인증업무인력 관리) ①</b> (현행과 같음)</p> <p>② 「<u>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u>」 부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251호, 2015.11.18.)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평가사를 소속 또는 등록하려는 인증기관은 해당 평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른 평가사 소속 또는 등록 보고 시 제1항제4호의 실무교육 수수료증을 대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관련 근거조항 명확화</p>
<p><b>제18조(기술위원회 운영) ①</b> (이하 생략)</p> <p>② (이하 생략)</p> <p>1. (이하 생략)</p> <p>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u>신기술 적용 여부</u> 및 평가 방법의 적합성</p> <p>③ 공단은 <u>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및 시장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u>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평가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p> <p>④ 기타 기술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p>	<p><b>제18조(기술위원회 운영) ①</b>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u>신기술 적용</u> 및 평가 방법의 적합성</p> <p>〈삭 제〉</p> <p>〈삭 제〉</p>	<p>기술위원회의 역할을 한정 (검토 및 자문)</p> <p>제7조의2 신설에 따라 신기술 평가 조항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⑤ 제2항에 따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수당 등 지급 근거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신기술 적용  
검토 신청서  
서식 신설

<신 설>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직 위		성 명	
	e-mail		전화(핸드폰)	
신기술 개요	신기술(설비)명			
	기술 개요			
	에너지절감 적용 분야	<input type="checkbox"/> 냉방 <input type="checkbox"/> 난방 <input type="checkbox"/> 급탕 <input type="checkbox"/> 환기 <input type="checkbox"/> 조명 <input type="checkbox"/> 신재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을 위해 위와 같이 검토를 요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귀하

- 첨 부 : 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기술 설명서 1부.  
 2. 신기술 적용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실적 자료 1부.  
 3.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1부.  
 4. 제품의 성능 관련 시험성적서 1부.  
 5. 그 밖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1부.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별지 제12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신기술 설명서</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u>1. 신기술 핵심내용</u> (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p> <p>가. <u>신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u></p> <p>나. <u>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u></p> <p>다. <u>신청 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등 현황</u> (규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인증분야 및 증빙자료 포함)</p> <p><u>2. 신기술 적용제품의 개요</u></p> <p>가. <u>제품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u></p> <p>나. <u>제품의 용도 및 건축물 적용 방법</u></p> <p>다. <u>제품의 국내외 건축물 적용현황 및 시장 규모</u></p> <p>라. <u>제품의 에너지성능 (구체적 데이터 제시)</u></p> <p>마. <u>제품의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적용 현황</u> (관련 규격, 해외 평가기준, 시뮬레이션 툴 등 성능평가 방법론 정립 현황)</p> <p><u>3. 기타 사항</u></p> </div>	<p>신기술 설명서 서식 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고
<p>[별표 1] 기상데이터</p> <p>1) 서울 (이하 생략)</p> <p>2) 부산 (이하 생략)</p> <p>3) 인천 (이하 생략)</p> <p>4) 대구 (이하 생략)</p> <p>5) 대전 (이하 생략)</p> <p>6) 광주 (이하 생략)</p> <p>7) 강릉 (이하 생략)</p> <p>8) 원주 (이하 생략)</p> <p>9) 춘천 (이하 생략)</p> <p>10) 전주 (이하 생략)</p> <p>11) 청주 (이하 생략)</p> <p>12) 목포 (이하 생략)</p> <p>13) 제주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별표6] 기상 데이터 신설에 따른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p>[별표 4]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 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처리절차</th> <th style="width: 20%;">소요일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기술 적용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접수 마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2회 (상·하반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에너지공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차 검토 및 보완요청 (인증평가 적용 방법론, 소요량 검토·산출 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연구기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차 검토 (신기술의 인증평가 적용 여부 및 평가 방법론의 적정성 검토)</td> <td style="text-align: center;">90일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에너지공단 (인증운영위원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기술의 적용여부 등 결정</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증평가프로그램 반영 (에너지소요량산출 계산식, 평가항목 입력란 등 프로그램 수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일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가프로그램 배포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1회 (12월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td> </tr> </tbody> </table>	처리절차	소요일수	비고	신기술 적용 신청	상시		↓			신청서 접수 마감	연2회 (상·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	↓			1차 검토 및 보완요청 (인증평가 적용 방법론, 소요량 검토·산출 등)		전문연구기관	↓			2차 검토 (신기술의 인증평가 적용 여부 및 평가 방법론의 적정성 검토)	90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운영위원회)	↓			신기술의 적용여부 등 결정			↓			인증평가프로그램 반영 (에너지소요량산출 계산식, 평가항목 입력란 등 프로그램 수정)	30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평가프로그램 배포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적용	연1회 (12월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p>- 신기술 적용 처리절차표 신설</p>
처리절차	소요일수	비고																																										
신기술 적용 신청	상시																																											
↓																																												
신청서 접수 마감	연2회 (상·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																																										
↓																																												
1차 검토 및 보완요청 (인증평가 적용 방법론, 소요량 검토·산출 등)		전문연구기관																																										
↓																																												
2차 검토 (신기술의 인증평가 적용 여부 및 평가 방법론의 적정성 검토)	90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운영위원회)																																										
↓																																												
신기술의 적용여부 등 결정																																												
↓																																												
인증평가프로그램 반영 (에너지소요량산출 계산식, 평가항목 입력란 등 프로그램 수정)	30일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평가프로그램 배포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적용	연1회 (12월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별표 5] 조치요구(처분)의 종류</p> <p>○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 개선, 권고로 처분</p> <table border="1" data-bbox="1048 296 1921 970"> <thead> <tr> <th data-bbox="1048 296 1167 384">조치요구 (처분)</th> <th data-bbox="1167 296 1921 384">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48 384 1167 624">경고</td> <td data-bbox="1167 384 1921 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 기준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중대하여 향후 재발방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사항</li> <li>○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3건 이상의 '개선' 처분을 받은 경우</li> <li>○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5건 이상의 '권고' 처분을 받은 경우</li> </ul> </td> </tr> <tr> <td data-bbox="1048 624 1167 767">개선</td> <td data-bbox="1167 624 1921 7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처리 관련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td> </tr> <tr> <td data-bbox="1048 767 1167 970">권고</td> <td data-bbox="1167 767 1921 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사항이 경미하여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td> </tr> </tbody> </table>	조치요구 (처분)	내용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 기준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중대하여 향후 재발방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사항</li> <li>○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3건 이상의 '개선' 처분을 받은 경우</li> <li>○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5건 이상의 '권고' 처분을 받은 경우</li> </ul>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처리 관련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사항이 경미하여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p>- 조치요구 처분 종류 및 기준표 신설</p>
조치요구 (처분)	내용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 기준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중대하여 향후 재발방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사항</li> <li>○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3건 이상의 '개선' 처분을 받은 경우</li> <li>○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5건 이상의 '권고' 처분을 받은 경우</li> </ul>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처리 관련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업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사항이 경미하여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6] 기상데이터

기상데이터  
추가 신설

1) 강릉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1.5	97.5	161.2	133.0	113.9	70.4	55.4	29.0	27.0	26.2
2월	2.5	139.7	179.6	149.3	141.0	92.6	85.5	44.4	42.7	35.9
3월	6.5	168.2	147.6	135.7	127.3	102.8	95.1	61.9	59.4	47.4
4월	14.0	198.6	120.9	129.8	119.3	116.5	106.7	80.6	77.2	56.4
5월	16.8	199.7	90.8	101.7	108.3	101.4	110.5	80.7	87.0	60.9
6월	22.1	160.8	69.8	83.2	76.9	87.5	78.8	75.0	69.0	58.4
7월	26.5	176.0	76.5	88.3	90.5	91.6	95.2	78.0	80.8	62.4
8월	24.6	174.2	95.3	106.2	93.0	100.7	84.9	77.3	68.2	57.3
9월	19.9	140.8	101.4	98.1	96.1	82.5	79.4	57.4	54.9	43.4
10월	15.6	126.5	134.4	116.2	109.3	80.1	74.9	44.2	43.8	37.1
11월	9.0	107.7	159.3	135.4	112.7	76.2	57.8	34.3	31.0	30.1
12월	3.7	96.1	174.6	134.3	130.8	65.7	63.1	27.4	27.3	25.8

<신 설>

2) 강화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3.5	95.8	142.6	111.9	111.0	61.5	60.9	31.6	31.6	29.7
2월	0.7	125.3	151.3	113.3	134.0	71.1	88.5	40.8	44.8	37.0
3월	4.3	166.7	142.6	119.0	118.9	80.2	80.0	49.2	49.0	43.8
4월	11.7	196.0	118.8	117.6	124.8	105.3	111.4	77.3	78.7	57.7
5월	15.6	213.7	95.5	107.8	114.9	108.3	117.0	87.0	92.3	64.8
6월	19.6	210.6	84.5	105.7	102.0	115.3	109.3	97.4	92.7	72.0
7월	23.1	161.0	71.7	76.3	87.7	76.9	92.6	66.7	77.5	57.7
8월	24.6	165.2	89.7	89.0	100.6	82.5	96.3	65.4	73.4	53.7
9월	19.5	160.3	117.4	104.9	117.4	85.9	98.7	60.7	66.4	50.1
10월	13.6	136.0	143.2	118.5	122.9	79.9	84.0	47.0	48.3	40.0
11월	7.7	112.9	164.2	127.7	129.4	71.0	72.5	34.9	35.5	32.2
12월	-0.3	90.4	151.4	113.1	119.3	56.3	61.1	27.9	28.5	26.9

현 행

개 정 (안)

비고

3) 거제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1.4	118.3	179.3	138.3	138.3	72.6	72.3	33.7	33.3	31.2
2월	3.7	137.2	162.5	131.9	134.1	83.4	86.2	44.2	46.0	38.3
3월	7.9	169.0	141.5	130.2	125.8	100.8	96.0	60.0	57.5	43.5
4월	13.1	226.8	129.3	129.4	139.2	114.7	124.3	80.1	84.1	55.5
5월	18.0	220.2	91.6	113.1	115.7	119.9	122.4	95.6	96.7	65.8
6월	20.8	205.5	75.4	93.3	95.4	100.1	103.6	83.9	86.9	62.7
7월	25.1	176.2	71.5	86.0	87.0	90.6	91.3	75.6	75.5	56.0
8월	25.5	188.6	92.4	104.5	105.7	102.4	104.2	78.9	80.1	56.3
9월	21.1	179.3	121.2	121.1	117.0	103.3	98.7	69.0	66.6	48.8
10월	16.9	155.7	157.6	140.0	126.9	98.5	86.6	53.7	50.1	42.3
11월	9.8	139.3	201.0	157.3	155.7	88.1	86.8	39.1	38.7	34.6
12월	5.1	104.9	172.7	134.6	131.1	73.0	70.4	31.7	31.5	29.6

4) 거창 ~ 65) 해남 (내용 생략)

66) 홍천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3.3	100.8	156.2	115.6	125.5	58.6	66.3	30.7	31.6	29.7
2월	-1.6	119.6	147.7	113.4	129.3	69.7	83.6	39.6	43.4	34.8
3월	4.0	152.2	126.2	109.1	114.8	82.4	87.9	54.6	56.7	46.6
4월	10.4	200.5	122.4	119.2	122.6	100.8	106.5	71.1	75.9	55.4
5월	17.4	226.2	100.6	115.7	122.8	115.3	126.9	89.2	98.5	64.7
6월	21.2	222.0	87.6	102.1	115.3	107.1	127.3	89.6	104.9	71.5
7월	24.1	156.3	67.8	69.4	85.0	68.0	89.4	58.5	73.2	51.7
8월	24.2	202.7	106.7	115.0	120.3	107.7	116.8	80.6	88.1	59.5
9월	18.5	139.4	106.0	90.0	102.3	69.2	81.9	48.3	54.0	42.4
10월	11.4	145.4	153.3	124.1	139.9	85.5	96.5	52.9	52.6	41.2
11월	5.1	85.4	118.9	85.3	108.7	50.6	70.8	30.4	35.5	28.2
12월	-2.1	84.6	133.8	96.9	109.3	47.4	56.5	27.2	27.7	26.8